



송파구의회
Songpa District Council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심사보고서

의안명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4호
심사일자	2026. 08. 27. (목)



위원장 최옥주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4호
------	-----

2026년 08월 27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08. 11. 송파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6. 08. 18.
- 다. 상정일자 : 2026. 08. 27. 제334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의 요지 (김종인 세무행정과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8,920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

※ 산출내역 :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289,197,393천원) × 0.01%

○ 관련 근거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출연의 필요성

-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강혜진 전문위원)

-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됨.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법정 출연금에 해당함.
- 본 기관은 지방세제 개선 및 세수 확충 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송파구를 포함한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출연 동의안은 2027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2,892만원**을 예산에 편성·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42만 2천원 증가(공동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 인상 등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함에 따라 증가 반영됨)하였음.

- 본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송파구의 출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 경비라 할 수 있음. 본 안건은 출연 금액을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송파구를 비롯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우리구의 세입 증대 기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 질의 : 이강무 위원 】

- 답변 : 김종인 주차정책과장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내용 및 교육 횟수는?
 - 지방세 연구 관련 교육으로, 매년 평균 60명 참여하고 있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